

 신안산대학교	<b>대학발전추진위원회 규정</b>	규정번호	4-1-15
		제정일자	2001.03.01
		개정일자	2024.4.26
		책임부서/팀·계	기획처

**제1조(목적)** 신안산대학교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수집·분석·검토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하고자 대학발전추진위원회를 둔다. <2019.11.14. 개정>

**제2조(구성)** ① 대학발전추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.)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, 직원 1인 이상(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신안산대학교 지부의 조합원)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 <2019.3.4. 개정> <2019.11.14. 개정>

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. <2011.12.12 개정> <2021.08.20.개정>

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수 있으며,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. <2011.12.12 신설>

**제3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**제4조(위원장의 임무)**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 <2011.12.12 삭제> <2011.12.12.개정> <2019.11.14. 개정>

**제5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
2. 대학발전에 관한 일반 사항
3. 기획업무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 <2011.12.12 신설> <2021.08.20.개정>
4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2019.11.14. 개정>

**제6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. <2012.12.20. 개정> <2019.11.14. 개정>

②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. <2024.4.26. 신설>

**제7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한다.

**제8조(간사)** <2019.11.14. 삭제>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